

대신대학교 대학원 학칙(통합)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학칙은 대신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의 건학이념의 실천과 대학의 교육목적에 입각하여 심오한 학문탐구와 질 높은 전문인 양성과 기독교 신앙의 이론과 실체를 교수, 연구하여 지도자로서 인격을 함양하고 독창적 능력을 개발하여 기독교 복음사업에 공헌할 목회자와 지도자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원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각 대학원의 명칭) 이 학칙에서의 본 대학교 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한다)이라 함은 일반대학원으로서의 대학원, 특수대학원으로서의 신학대학원을 통칭한다.

제3조 (교육목표) 각 대학원의 교육목표는 다음과 같다.

- ① 일반대학원 : 개혁주의 신학사상에 입각하여 장로회 신조와 헌법에 기준한 학문이론과 응용방법을 교수, 연구하여 국가와 교회발전에 공헌하는 학자와 지도자를 양성한다.
- ② 신학대학원 : 대한 예수교장로회 총회의 헌법과 개혁주의 신학교육을 토대한 훌륭한 신학이론과 응용방법을 교수하여 국가와 교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격과 독창적 능력을 갖춘 목회자 및 신학자를 양성한다.

제4조 (설치과정) ① 일반대학원에는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을 두며, 박사 후 연구과정을 둘 수 있다. (신설 2010. 7.20)

② 특수대학원에는 석사학위과정을 둔다. (개정 2010.7.20)

제5조 (전공 및 정원) 대학원에 설치한 학위과정의 학과·전공 및 대학원별 입학 정원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09. 7. 1, 개정 2010. 7.20)

제6조 (수업방법) 일반대학원, 신학대학원의 수업은 주간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필요에 따라 야간수업과 계절수업을 병행할 수 있다.

제2장 입 학

제7조 (입학 시기) 대학원 학생의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 포함) 시기는 매 학기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제8조 (입학 자격) ① 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국·내외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취득 예정자,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다만, 입학자격의 추 가적 사항이 요구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2016.9.1.)

1.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가. 신학과 : 목회학 석사(M.Div.)학위를 받은 자 또는 동등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개정2011.10.1.,2016.9.1.)

나. 영어영문학과·사회복지학과·음악학과 : 제①항에 규정한 입학자격을 갖춘 자
(개정2010.7. 20)

2.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 신학과 (신설 2010. 7.20, 개정 2011.10.1.,개정2016.9.1)

가.목회학 석사(M.Div.)학위 취득자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석사학위 취득자

나. 세부사항은 대학원위원회 결의에 의하여 모집요강에 공고한다.

3. 신학대학원은 수세 후 3년 이상 된 자로서 제①항에 규정한 입학자격을 갖춘 자(개정 2010.7.20)

제9조 (입학지원절차 및 전형) ① 각 대학원에 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고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입학전형은 각 대학원별로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으로 구분하여 실시 할 수 있다.

③ 입학전형 방법은 서류전형 및 면접에 의한 전형과 필답시험, 실기시험에 의한다.

제10조 (입학 허가) 대학원 입학전형에 합격한 자의 입학은 각 대학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이 허가한다.

제11조 (특별전형)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제8조에 규정한 입학자격을 갖추고 학위과정에 입학할 희망하는 경우 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 입학할 수 있다.

①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위탁학생

②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

③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과 대학 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제12조 (신입생 등록) ① 입학이 허가된 자는 지정기일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등록을 마쳐야 한다.

② 지정기일 내에 전항의 절차를 마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입학허가를 취소한다.

제13조 (재입학) ① 제적 또는 자퇴한 학생이 재입학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학년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수를 뺀 범위 안에서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1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② 동일 과정에 재입학 한 자에게는 제적 또는 자퇴 전의 취득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③ 징계에 의한 제적자는 재입학 할 수 없다.

④ 재입학자의 재학연한은 과거 재적기간을 포함한 기간으로 한다.

제14조 (편입학) ① 편입학은 당해 학년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수를 뺀 범위 안에서 선발한다.

② 편입학에 관한 세부 사항은 각 대학원 학사내규로 정한다.

제3장 등록, 휴학, 복학, 자퇴 및 제적

제15조 (등록) ① 학생은 매 학기 개시일전 지정된 기간 내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학생은 각 대학원 과정별 수업연한 학기까지 정규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수업연한 이내에 필요한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자에게는 학점등록을 허가할 수 있다.

④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입학 시 입학금 및 등록금, 기타 소정의 납입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⑤ 입학금과 등록금의 반환은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따라 반환한다.(개정2011.4.1)

제16조 (휴학 및 복학) ① 휴학기간은 1회에 2학기를 초과하지 못하며, 재학 중 석사 4학기, 박사 6학기에 한한다. 단, 질병이나 의무 군복무 및 임신과 출산, 육아로 인한 휴학기간은 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2010 .7 20,2017.1.1)

②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복학은 휴학기간 만료 및 휴학 사유소멸 시에는 매 학기 초 복학기간 내에 복학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 (제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된다.

- ① 휴학기간이 경과하여도 복학하지 아니한 자
- ② 매 학기 소정기간 내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 ③ 재학연한이 만료된 자
- ④ 징계에 의하여 퇴학 조치된 자
- ⑤ 성적불량 또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학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된 자
- ⑥ 자퇴원을 제출하여 승인된 자

제18조 (자퇴) 자퇴를 원하는 자는 자퇴원을 학과장을 경유하여 소속 대학원에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장 수업연한·재학연한·수업·교과과정·학점

제19조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은 다음과 같다.

1. 석사과정의 수업연한은 2년(신학대학원 3년)으로 하고 재학연한은 6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박사과정의 수업연한은 3년으로 하고 재학연한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7.20)
2. 재입학의 경우 재학연한은 재입학 후 본 대학원에서 수업하여야 할 재학연한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20조 (수업일수) 각 대학원의 수업일수는 매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제21조 (교육과정) ① 교육과정은 대학원위원회에서 심의한다.

② 석사과정에 학부와 연계과목을 둘 수 있다.

제22조 (학점이수) ① 석사과정 수료를 위한 최저학점은 24학점 이상(전공 18학점 이상), 박사과정 수료를 위한 최저학점은 36학점 이상(전공 24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개정 2010.7.20., 개정 2020.1.1)

② 학부과정에서 이수한 전공분야가 다른 경우에는 선수과목을 이수하여야 하며 수료학점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③ 신학대학원의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90학점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8.9.28.)

제22조의 2 (학점 교환) ① 각 대학원은 타 대학원과의 협정에 의하여 학점교환을 실시 할 수 있다.(신설2012.07.01)

② 전 항에 의하여 취득한 학점은 본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과 동일하게 인정한다. 단, 동일과정에서 이수한 학점은 6학점 범위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신설2012.07.01)

③ 본 대학원 당해학기에 개설된 교과목과 중복되는 타 대학원 교과목은 수강 할 수 없다.(신설 2012.07.01)

제23조 (수강신청 제한) ① 수강신청은 학기당 9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선수과목과 보충과목의 학점은 예외로 한다.

② 신학대학원은 22학점까지 신청할 수 있다.(개정2014.9.1.)

제24조 (학기당 이수학점) ① 학기당 9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할 수 없다.

② 신학대학원은 22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할 수 없다.(개정2014.9.1.)

제25조 (수료) ① 수업연한이 경과하고 소정의 학점을 취득한 자는 각 학위과정의 수료자로 인정한다.

② 수료자에게는 별지 3호 서식의 수료증서를 수여 할 수 있다.

③ 학위과정별 수료인정 시기는 매 학기 말일로 한다.

제5장 시험 및 성적

제26조 (시험) 매 학기마다 실시하는 시험은 정기시험과 임시시험으로 구분하며, 정기시험은 매 학기말에 실시하고, 임시시험은 과목에 따라 실시할 수 있으며 교과목 담당교수가 판단하여 실시 한다.

제27조 (성적평가) 학업성적의 등급과 점수 및 평점은 다음과 같다.

등급	점수	평점	등급	점수	평점	등급	점수	평점
A+	100-95	4.5	A°	94-90	4.0	F	59이하	0.0
B+	89-85	3.5	B°	84-80	3.0	P	PASS	합격
C+	79-75	2.5	C°	74-70	2.0	NP	nonpass	불합격
D+	69-65	1.5	D°	64-60	1.0			

제28조 (이수인정 평점) ① 학위과정 수료에 필요한 과목별 이수인정 평점은 학생의 수강 과목 별 출석이 강의실시 시간의 3분의 2이상(신학대학원은 4분의 3이상)이고 과목당 성적평점이 2.0(C°) 이상 되어야 하며, 신학대학원은 과목당 성적평점이 1.0(D°)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8.9.28.)

② 각 학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이수과목의 총 평점평균이 3.0(B°) 이상이 되어야 하며, 신학대학원은 총 평점평균이 2.0(C°) 이상이어야 한다.

제29조 (편입생의 인정 학점) 편입생이 전적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대학원 교과목과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된 경우에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제6장 학생지도 및 장학금

제30조 (학생지도) ① 학생은 대학원 학칙과 학사내규 및 각종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학업성적이 우수하여 타의 본이 되었거나 선행 등으로 학교의 명예를 높인 자는 대학원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를 포상할 수 있다.

③ 학생의 본분과 학칙에서 크게 벗어난 행동을 하거나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킨 행위를 한 자 등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중에 따라 이를 징계할 수 있다.

제31조 (장학금) 각 대학원의 장학금 운영규정에 의해 지급한다.

제7장 공개강좌

제32조 (공개강좌) ① 각 대학원의 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

② 공개강좌는 직무, 교양 또는 연구상 필요한 학식 및 기술의 습득을 희망하는 자를 지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③ 공개강좌의 주제, 기간, 수강자격, 정원 장소 등을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정한다.

④ 공개강좌를 이수한 자에게는 소정의 이수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제8장 연구생

- 제33조 (연구생)** ① 본 학칙 제8조의 입학자격을 구비한 자로서 연구를 희망하는 자에게는 소정의 전형을 실시한 후 연구생으로 입학할 수 있다.
- ② 연구생이 학위과정에 입학한 경우 연구생이 취득한 학점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 ③ 연구생으로서 연구실적이 양호한 자에게는 별지4호 서식에 의한 연구실적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 ④ 연구생의 전형 및 등록금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⑤ 제8조에 준한 자격을 구비한 자로서 청강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원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신학대학원 청강생으로 취득한 학점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9장 자격시험

제34조 (자격시험 종류) 학위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다만, 신학대학원은 외국어시험을 제외한다.

제35조 (자격시험 응시) ① 석사 또는 박사학위 논문제출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개정 2010. 7.20)

② 자격시험에 대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0장 학위청구논문

제36조 (학위청구논문 연구계획서 제출) 각 대학원의 특성에 따라 학위청구논문을 요구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사항은 세부사항은 각 대학원 학칙시행내규로 정한다.(개정 2011.10.1)

제37조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각 과정의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과 같다.

① 석사학위과정은 4학기, 박사학위과정은 6학기 정규 등록을 필한 자. (개정 2010. 7.20)

단, <삭제 2018.9.28.>

② 소정의 학점을 취득한 자.

③ 취득학점 평균 평점이 3.0(B⁺)이상인 자.

④ 석사학위과정은 1학기 이상, 박사학위과정은 2학기 이상 논문지도를 받은 후 지도교수의 논문제출 승인을 받고 공개발표회를 마친 자.(개정 2010. 7.20)

⑤ <삭제 2018.9.28.>

⑥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신설 2010 .7.20)

제38조 (논문제출)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된 기간에 표절검사 결과 확인서와 심사용 논문을 석사학 위과정은 3부, 박사학위과정 논문은 5부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 7.20,2017.1.1)

제39조 (논문심사위원) ① 학위청구논문의 심사위원의 수는 석사학위과정은 3인, 박사학위과정은 5인으로 한다. 단, 박사학위과정 심사위원 중 2인은 외부인사로 한다.(개정 2010 .7.20, 개정 2011. 10. 1)

② 심사위원의 자격은 본교 교원 및 겸임교수 중에서 해당학과 해당전공분야 교원을 우선 함을

원칙으로 하며, 박사학위과정의 심사위원은 박사학위 소지자를 원칙으로 한다. 단, 외부 심사위원은 반드시 전공분야의 박사학위를 소지한 조교수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1. 10. 1)

③ 학위청구논문심사위원의 선정은 대학원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39조의 2 (심사위원장)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심사위원과 동등한 의결권을 갖는다. 다만, 해당 논문지도교수는 심사위원장이 될 수 없다.(신설 2010 .7.20)

제40조 (논문심사 및 합격판정) ① 학위청구논문의 심사는 논문원고와 제출자에 대한 구술시험을 병행한다.

② 석사학위과정의 학위청구논문 심사판정은 심사위원 3인중 2인의 찬성으로 합격을 판정한다.

③ 박사학위과정의 학위청구논문 심사판정은 심사위원 5인중 4인의 찬성으로 합격을 판정한다. (신설 2010 .7.20)

④ 학위청구논문 심사는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며, 석사학위과정은 심사위원 2인 이상, 박사학위과정은 4인 이상으로부터 80점 이상의 평가를 받을 경우, 합격으로 한다.(신설2010 .7.20)

제41조 (논문의 재심사) 학위청구논문이 심사에 불합격한 논문은 논문지도교수의 지도하에 수정 보완 후, 차 학기에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0 .7.20)

제11장 학위수여

제42조 (학위수여) ① 각 대학원 학위과정에서 이수학점을 취득하고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학위 청구논문 심사와 구술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학위를 수여 한다.

② 신학대학원 학생은 규정된 취득학점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졸업시험)에 합격한 자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학위를 수여한다.(개정 2018.9.28.)

제42조의 2 (학위논문의 공포)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그 학위수여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논문을 공표하여야 한다.(신설 2010 .7.20)

제42조의 3 (명예박사학위의 수여)(신설2011.4.1) ① 고등교육법 제35조 제4항 및 동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학문과 문화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거나 교계 및 사회, 대학발전에 현저한 공적을 나타낸 자에게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② 명예박사학위의 수여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별지1의3호 서식에 의한 학위기를 수여한다.

③ 명예박사학위를 받은 자로서 그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장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④ 명예박사학위 수여는 본교의 학위수여일 이외에도 할 수 있다.

제43조 (학위종별) 각 대학원에서 수여하는 학위종별은 <별표1>과 같다.

제44조 (학위수여 시기) 학위수여는 연 2회로 하며, 2월과 8월 중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5조 (학위수여의 취소) 학위를 받은 자로서 그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위를 취소할 수 있다.

제12장 조 직

제46조 (직제) ① 대학원의 직제는 법인 정관과 본 대학교 직제규정의 예에 의한다.

② 각 대학원 학과에는 학과장을, 전공에는 지도교수를 둘 수 있으며, 학과장은 학과의 제반 학사업무를 관장하며, 학생의 전공연구과제 지정, 기타 수학지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제13장 위원회

제47조 (구성 및 임기) ①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원위원회를 둔다.

② 대학원위원회는 7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일반대학원원장이 위원장이 된다. 단, 원장이 아닌 위원은 총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보직이 변경된 경우에는 신임 보직자가 그 지위를 승계한다.

제48조 (대학원위원회 기능) 대학원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단, 신학대학원은 별도 규정에 따라 심의한다.

- ① 입학, 수료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 ② 학과 및 전공의 설치와 폐지에 관한 사항
- ③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 ④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 ⑤ 장학금 및 연구비의 지급 또는 보조에 관한 사항
- ⑥ 지도교수 및 논문지도교수와 심사위원의 선정에 관한 사항
- ⑦ 공개강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⑧ 대학원 학칙 및 제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⑨ 기타 대학원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9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여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장 보 칙

제50조 (준용사항) 이 학칙에 규정된 것 이외의 사항은 본 대학교 학칙을 준용한다.

제51조 (시행세칙) 이 학칙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세부사항은 각 대학원의 학사내규로 따로 정한 후 위원회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시행할 수 있다.

제52조(개정절차) 대학원의 학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개정안 사전공고·심의 및 공포의 절차를 거쳐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① 이 학칙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일반대학원 학칙, 신학대학원 학칙은 폐지한다.
- ② 이 학칙 시행으로 구 학칙 시행 당시의 대학원 재학생에게 불리하게 될 경우에는 그 부분 에

한하여 구 학칙을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신학대학원 입학정원 60명)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0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일반대학원 신학과 박사학위과정 신설, 입학정원 5명)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명예박사학위 수여)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8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대학원별 학위과정 전공분야 및 학생정원

대학원	과정	계열	학과	학위수여종별	입학정원
					2011 학년도
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인문사회	신학과	신학석사(Th.M.)	15
			영어영문학과	문학석사(M.A.)	
			사회복지학과	문학석사(M.A.)	
		예능	음악학과	음악학석사(M.Mus.)	
	박사학위과정	인문사회	신학과	철학박사(Ph.D.)	5
신 대 학 원	석사학위과정	인문사회	신학과	목회학석사(M.Div.)	60

[별지서식 1] - ①

[일반대학원 석사 학위증서 양식]

석 제 호

학 위 기

성 명

년 월 일 생

위 사람은 본 대학원 석사과정을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하여 아래의 논문을 제출하고 대학원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하여 ○○석사()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를 인정함

논문제목 :

년 월 일

대신대학교 대학원장 (학위) ○ ○ ○ 인

위의 인정에 의하여 ○ ○학 석사 학위를 수여함.

대신대학교 총장 (학위) ○ ○ ○ 인

학위등록번호 : 대신대 ○ ○ ○ ○(석)○ ○ ○ 호

[별지서식 1] -②

[일반대학원 박사 학위증서 양식]

박 제 호

학 위 기

성 명

년 월 일 생

위 사람은 본 대학원 박사과정을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하여 아래의 논문을 제출하고 대학원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하여 ○○박사()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를 인정함

논문제목 :

년 월 일

대신대학교 대학원장 (학위) ○ ○ ○ 인

위의 인정에 의하여 ○ ○학 박사 학위를 수여함.

대신대학교 총장 (학위) ○ ○ ○ 인

학위등록번호 : 대신대 ○ ○ ○ ○(박)○ ○ ○ 호

[별지서식 1] -㉓(신설2011.4.1)

[일반대학원 명예박사 학위증서 양식]

명박 제 호

학 위 기

성 명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에 크게 공헌을 하였으므로
본 대학교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명예신학박사학위를 수여하
고자 이에 추천함.

년 월 일

대신대학교 대학원장 (학위) ○ ○ ○ 인

위의 인정에 의하여 명예신학박사학위를 수여함.

대신대학교 총장 (학위) ○ ○ ○ 인

학위등록번호 : 대신대 ○ ○ ○ ○ (명박) ○ ○ ○ 호

[별지서식 2]

[신학대학원 석사 학위증서 양식]

제 호

학 위 기

성 명 :

년 월 일 생

위 사람은 본교 신학대학원 신학과정을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하여 목회학석사(M. Div.)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를 증명함

년 월 일

대신대학교 신학대학원장 (학위) ○ ○ ○ 인

위 증명에 의하여 목회학석사(M. Div.)의 학위를 수여함

대신대학교 총장 (학위) ○ ○ ○ 인

학위등록번호 : 대신대 ○ ○ ○ ○(석)○ ○ ○ 호

[별지서식 3]

[수료증서 양식]

수 료 증

성 명 :

생년월일 :

전 공 :

위 사람은 본 대학교 ○○○대학원 석(박)사 과정을 이수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대신대학교 대학원장 (학위) ○ ○ ○ 인

대신대학교 총장 (학위) ○ ○ ○ 인

[별지서식 4]

[연구실적 증명서 양식]

○○○대학원 제 호

연구실적 증명서

성 명 :

생년월일 :

위 사람은 본 대학교 ○○○대학원 연구생으로 연구실적이 양호하였기에 이를 증명함.

년 월 일

대신대학교 ○○○○대학원장 (학위) ○ ○ ○ 인